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함열여자중학교

I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

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교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개인 교환학습 :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 : **2주일 이내**
- 내용 : 교환학습
- 방법 :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연속은 10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별표8] 2조 라목 7)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II 체험학습 기본 방침(현장체험학습 제외)

1. 체험학습 대상 및 종류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고등학교는 동일계열, 학과에 맞추어 시행한다(단, 정기고사 실시기간은 제외함).

나.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2. 체험학습 운영 학칙 제정

가. 각급 학교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 시행 방침 등을 학교의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그리고 학교장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교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나. 학칙 및 세부 규정은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시행하여 민원 소지를 최소화한다.

다. 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학교급·지역·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체험학습 운영 방법

가.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한다.(※ 결재는 해당학교 위임·전결규정을 따름)

나. 체험학습을 위하여 교환학습(개인,단체)을 의뢰 받았을 경우,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의뢰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 학생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학 학교장과 위탁 학교장, 그리고 각 담임, 보호자가 공동으로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라. 위탁 학교장 및 담임교사는 위탁교육 학생과 보호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마. 소속 학교장 및 담임교사는 체험학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바. 학급 담임교사는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기간 중의 출석상황을 확인하여 정리한다.

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하며(비공개 처리), 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Ⅲ 개인 교환학습

1. 개인 교환학습 운영

- 가.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1개월(4주)** 이내로 한다.
- 나. 개인 교환학습은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다. 재학 학교장은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한다.
- 라. 개인 교환학습을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학생의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 마. 개인 교환학습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바. 개인 교환학습은 각종 (대안)학교는 물론,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2. 개인 교환학습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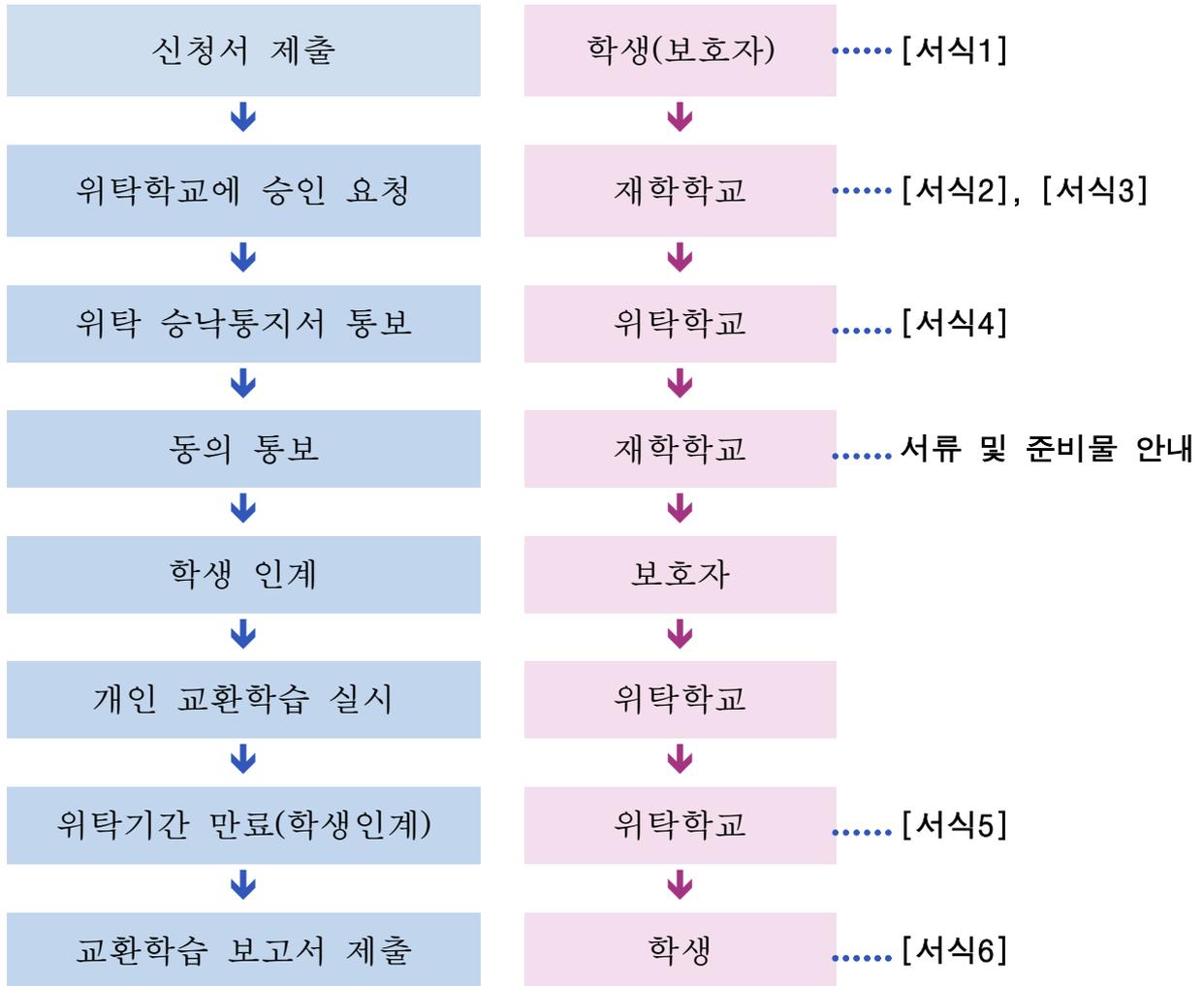
- 가. 개인 교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방법, 또는 통학방법, 교환학습기간 중의 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서식1](개인)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학교에 제출한다.
- 나. 재학 학교장은 희망학생(보호자)의 교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고 자료 **[서식2](개인)교환학습 의뢰서**와 **[서식3]교육과정 진도 상황표**를 작성하여 희망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 다.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은 교환학습 의뢰서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의뢰서 접수 후 **[서식4](개인)교환학습 승낙 통지서**를 재학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팩스, 공문 등)
- 라. 재학 학교장은 위탁 교육에 대한 동의를 통보 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위탁 교육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및 준비물과 함께 보호자가 대동하여 위탁기관장에게 인계한다.

<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 ①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또는 개인용 생활기록부 사본 파일 1부
- ② [서식3]교육과정 진도 상황표 1부
- ③ 기타 학생 교육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는 동봉하여 송부함
- ④ 학생 준비물 지참 확인 - 교과서, 학습장, 학용품 등

- 마. 개인 교환학습 실시 중 해당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해당 학교장이나 보호자와 수시 전화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바. 개인 교환학습 실시 후에는 **[서식5](개인)교환학습 결과 통지서**를 기록, 첨부하여 학생과 함께 원적 학교에 인계한다.
- 사. 개인 교환학습 기간이 종료되면 **[서식6](개인)교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아. 개인 교환학습 신청절차



1. 단체 교환학습 운영

- 가.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나. 단체 교환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 다. 단체 해외 교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 라. 오전에는 교과교육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오후에는 체험학습위주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마.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환학습시, 도·농어촌 학교별로 교환학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 단체 교환학습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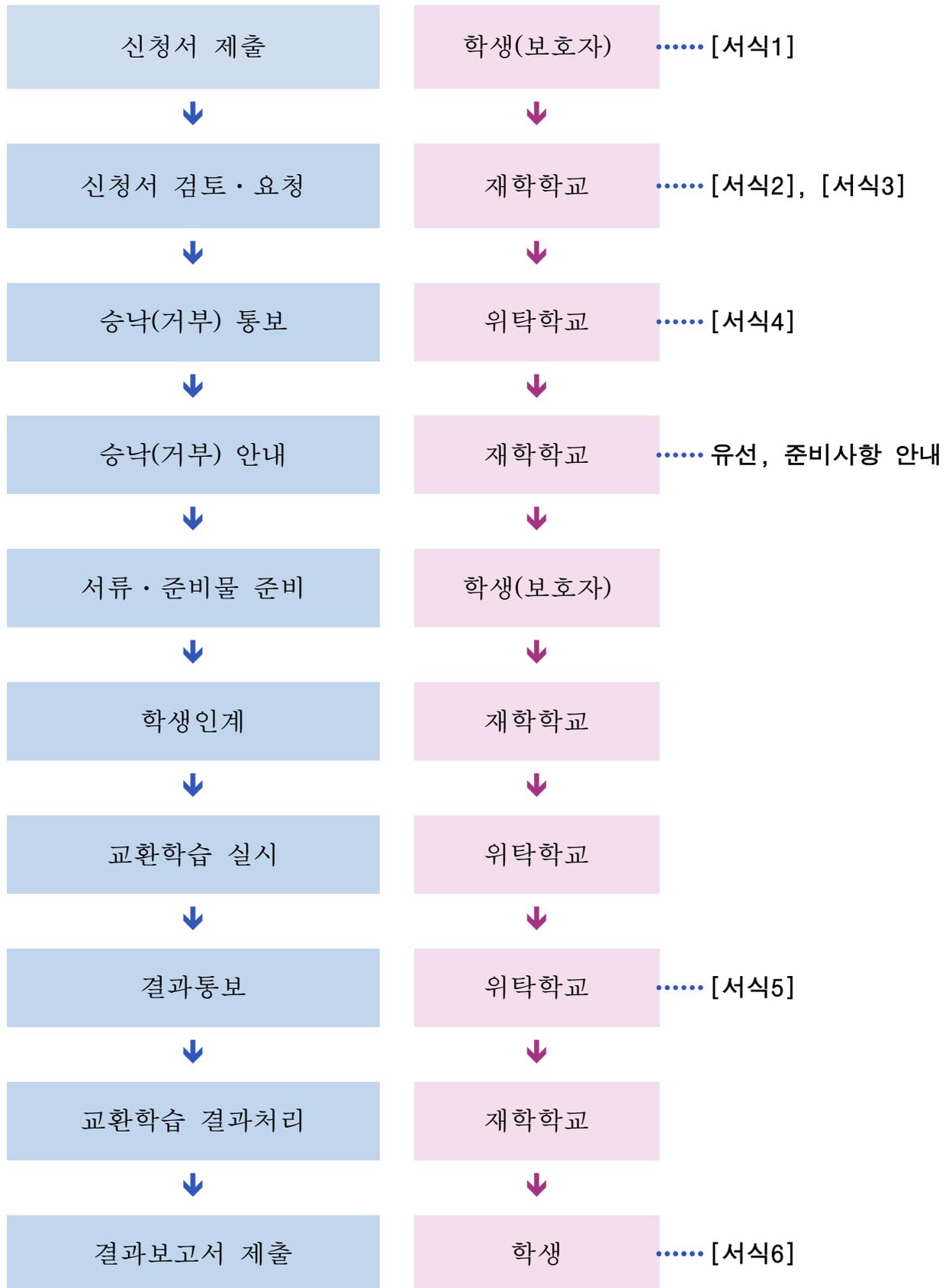
- 가. 단체 교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방법, 또는 통학방법, 교환학습기간 중의 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서식1](단체)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 학교에 제출한다.
- 나. 재학 학교장은 교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서식2](단체)교환학습 의뢰서**와 **[서식3]교육 과정 진도 상황표**를 작성하여 위탁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 다. 위탁교육 실시 학교장은 교환학습 의뢰서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의뢰서 접수 후 **[서식4](단체)교환학습 승낙(거부)통지서**를 재학 학교장에게 통보한다.(팩스, 공문 등)
- 라. 재학 학교장은 위탁 교육에 대한 동의를 통보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위탁 교육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및 준비물과 함께 위탁학교장에게 인계한다.

<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 ① [서식3]교육 과정 진도 상황표 1부
- ② 학생의 특기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있을 시는 동봉하여 송부(상담일지 또는 생활기록부 파일 복사본 1장 등)
- ③ 학생 준비물 지참 확인 - 교과서, 학습장, 학용품, 생활용품 등

- 마. 단체 교환학습 실시 중 해당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는 교환학습을 중지하거나 보호자와 수시 전화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바. 단체 교환학습 실시 후에는 교환학습 활동 상황, 교육과정 진도 상황, 교환학습 기간 중의 평가결과, 출석상황 등을 참고자료 **[서식5](단체)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여 학생과 함께 원적 학교에 인계한다.
- 사. 학생은 단체 교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6](단체) 교환학습 보고서**를 재적 학교에 제출하고, 담임(학교)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아. 단체 교환학습 신청절차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연속은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 체험학습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1)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 사용 시 가정학습 포함 연 30일 이내
- 2)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 연 15일 이내
-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인솔보호자가 없는 경우 [서식 8] 명예교사 위촉장, 가정학습의 경우 [서식9]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1]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2])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사.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